대학생 자녀학자금 대부지침

제 정 1999.06.14 개 정 2001.02.13 개 정 2004.12.14 정 2006.04.19 개 정 2007.12.06 전문개정 2011.11.08 개 정 2013.03.20 개 정 2013.12.31 개 정 2014.07.25 개 정 2014.08.25 정 2014.12.26 개 개 정 2016.12.02 개 정 2018.11.01 개 정 2021.04.07

[인사노무처 급여복지부 042-600-8169]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학생을 자녀로 둔 우리 공사 임직원에게 그 자녀의 학자금을 대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한다.<개정 2021.04.07>

제2조(지원대상) 임원 및 정원내 직원(이하 직원 이라 함)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한다. <개정 2014.07.25.>, <개정2014.12.26.>.,<개정 2021.04.07>

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삭 제 <개정 2013.03.20., 2014.07.25., 2021.04.07>
- 2. "대학생"이라 함은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로서 국내·외에 설립된 학교 중 수업 연한 2년 이상의 대학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입학 및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.
- 3. "학자금"이라 함은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.<개정 2018.11.6., 2021.04.07>

제2장 삭 제 <개정 2021.04.07>

제3장 대학생 자녀 학자금

제10조(대부대상)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부한다. 제11조(대부대상자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- 1.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원
- 2. 급여(가)압류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
- 3. 대부금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한 사실이 있는 직원
- ②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(대부포함)을 지원받은 사실이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금액은 대부대상에서 제외하며, 대부 시행후 학자금을 대부 받은 모든 직원 자녀의 대부관련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제공된다. <개정 2014.08.25, 2014.12.26>
- ③ 국외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의 경우 학위취득과 무관한 학습과정은 대부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4.08.25>

제12조(대부기준) ① 장기대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한다.

- ② 대부횟수는 2년제 전문대학은 4회, 3년제 전문대학은 6회,4년제 대학은 8회, 5년제 대학은 10회, 6년제(의대 등) 대학은 12회를 한도로 한다.
- ③ 입학금의 대부는 자녀 1인당 1회로 한다.
- ④ 국외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「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특례법」제6조에 의한 공시정보(대학 알리미웹사이트) 중 전년도 서울소재 사립대학(일반대학)의 평균등록금을 대부상한선으로 한다.
- ⑤ 당해연도 납부분에 대하여는 동일년도 내에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대부금액 단위는 1만원으로 하며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.

제13조(대부신청) 학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학자금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1. 가족관계증명서(최초 1회)
- 2. 학자금 대부신청서(별표2)
- 3. 학자금 납입증빙 서류(납입지로용지로 신청할 경우 추후 납입영수증 정본 제출)
- 4. 재학증명 서류(국외대학 재학자녀로서 최초 1회에 한함)
- 5. 대부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(별표3)<신설 2014.08.25>

제14조(대부시기와 방법) 대부는 매년 3월, 9월에 시행하며 별도 사내공지에 따라 제13조의 신청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한다.

- 제15조(채권 확보)①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채권 확보 방법은 퇴직급여 담보를 원칙으로 하되, 퇴직급여 담보가 불가할 경우(또는 담보 설정액이 채권 대여금에 미달할 경우)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. <개정 2021.04.07>
- ②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대부일로부터 상환완료일 까지로 한다. 단, 정년퇴직일이 상환시작일보다 앞설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보증보험료는 직원(대부자) 본인이 부담한다.

제16조(상환조건) 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대부이자는 무이자로 한다.

- ② 해당자녀 졸업 익년도 1월부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또는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한다. 이때, 졸업시기는 4년제 대학일 경우 남자는 입학월로부터 8년, 여자는 5년이 경과한시점을 졸업시기로 간주하며, 해당 학교가 4년제 대학이 아닐 경우(전문대, 의학대학 등) 그차이 기간만큼 졸업시기에 가감한다.
- ③ 대부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에서 공제한다.
- ④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부금을 중도상환 할 수 있다.(단, 대부금 전액)
- ⑤ 회사는 급여(가)압류 및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의 대부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해당 직원은 대부금 총액을 즉시 중도상환 하여야 한다.
- ⑥ 대부 시행후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(대부포함)과 우리공사에서 대부받은 학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학교에 실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 할 경우, 그 초과 금액은 1개월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12.26>
- 제17조(퇴직시 환수) ① 대부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전까지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
-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상환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부당 대부자 처리) 대부대상자가 허위 문서 작성 등 부당 대부자로 확인될 경우 대부 금을 전액 환수하며, 대부기간에 대하여 대부금에 본사 주거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11년 11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,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학자금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개정 2021.04.07>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04월 07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대학생 학자금 대부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【별표1】삭 제 <개정 2016.12.2., 2021.04.07>

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신청서

구 분	기	재	사	항			
신 청 직 원	소 속:	직 a)		급 : 번 :			
	성 명:	사					
	입사년월일 :	주민등	독번조	₹:			
	휴대전화번호 :)J	· 바 ·				
자녀인적사항	성 명: 학교명:	-	별 : ㄹ :		l 41∃⊒l E:	년제, 6년제	
	역 교 정 · 학 과 명 :				∥, 4년세, 5 (입학년도:		
	학 번 :			국내대학/		,	
	ㅋ	휴대전	·		에거네ㅋ		
	학교코드 :	11 11 12	.~1 12				
등록금납입액	기 분 : (상반기, 하반기)	<u>-</u>	금	액 :		원 (A)	
타기관	대부(장학)금명 :	,	급	액 :		원 (B)	
수혜금액	기 관 명 :		Ц	., .		t (D)	
대부신청액	원 (A-B, 1만원 미만은 절사)						
	<u> </u>						
상환방법 선택	자녀 졸업 후 2년거치 3년분할성	y환 (), 일시싱	환 ()	
	※ 표기하지 않을 경우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간주						
계좌 입금의뢰	은 행명:						
	계좌번호 :						
	예 금 주 :			인명의)			
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에 동의하며							
	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신청하오니	│ 대부ㅎ	- 여	주시기 바肓	랍니다.		
ವಾ H	. 1 트립크다버셔스로 키비 ㅠㄴ	ון און א))	(구축 서소	· 구 기비 제	ラ)	
심구	: 1. 등록금납부영수증 정본 또는				-등 성논세	물)	
2. 대상 자녀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							
			년	월	일		
			_	_	_		
	신청	당인			(인)		

대부 자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

학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15조, 제17조, 제24조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
경우에는 '개인정보 보오법」15소, 제17소, 제24소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오에 관한 법률」 (이하'신용정보법')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 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	
	학자금 대부	■ 학자금 대부 심사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						
목 적	이중지원 확인·반환 (상환)안내	●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●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●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						
	※ 이중지원 :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							
항 목	■ 대상학생 정보 : 성명, 휴대전화번호, 학교명, 학과명, 학번, 생년월일 등 ■ 대부관련 정보 : 대부종류, 대부일자, 대부금액, 상환일 등 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 보도 포함됩니다.							
기 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의 동의일로부터 대부금 상환시까지 위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됩니다. 단, 상환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							
거부권리 및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 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 대부 신청·선정·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.							
제공 및 조회 기관	■ 제공기관 :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 ■ 조회기관 : 국가,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기관							
T 41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							
동의 여부	동의합니다. 고유식별정보:	가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하는것에 생년월일 등의하지 않음 □)						
		년 월 일 대부대상 학생 성명 : 서명 또는 (인) (생년월일 :)						

(5-2)-7